

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이유

농업인 공익수당의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보다 확대하고, 이에 맞게
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

나.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
(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)

다. 공익수당 지급액을 “연 50만원” 에서 “연 60만원” 으로 상향·
조정 (안 제9조)

라. 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 및 기준을 변경 등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과 농업인 소득 안정도모를 위해 2022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 중
- 그러나 지급액과 수혜 대상자 등 타 시도와의 형평성, 제도의 실효성 등의 이유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⁵⁾

나.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

○ 내수면 어업인과의 형평성

- 이 조례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업인에만 한정하고 있어 내수면어업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
- 강원, 충남, 전남, 경북, 경남 등 타 시도의 경우 어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

○ 타 시도와의 형평성

- (지급금액)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 9개 단체로 평균 6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, 충북은 평균 수준에도 못미치는 50만원 지급
- (자격요건) 지급대상을 3년 이상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,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등록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등 타 시도 대비 자격요건이 높은 수준임

5)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(2022. 9. 28.)에서 박경숙 위원장이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음

○ 형평성 관련 타 시도 비교는 아래 표와 같음

시도	사업명 (조례 제정)	시작 연도	부담 (도:시군)	지급 대상	지급액/년 (지급시기)	자격요건 (주소/경영체등록)
계	9개 시도	-	-	-	평균 약 60만원	-
①경기	농민기본소득	2021	5:5	농업인 (개인별)	60만원 (분기별 15만원)	3년/1년 이상
②강원	농어업인수당	2021	6:4	농어가	70만원 (8월 ~)	2년/2년 이상
③충북	농업인 공익수당	2022	4:6	농가	50만원 (9월 ~)	3년/3년 이상
④충남	농어민수당	2020	4:6	농어가	80만원 (8월 ~)	1년/1년 이상
⑤전북	농업농촌공익적 가치지원	2020	4:6	농가	60만원 (9월 ~)	2년/2년 이상
⑥전남	농어민 공익수당	2020	4:6	농어가	60만원 (3~4월)	1년/1년 이상
⑦경북	농어민수당	2022	4:6	농어가	60만원 (4월, 8월)	1년/1년 이상
⑧경남	농어업인수당	2022	4:6	농어가 외 (부부 개인별)	30+30(공동) (6월 ~)	1년/1년 이상
⑨제주	농민수당	2022	전액 도비	농업인 (개인별)	40만원 (6월 ~)	3년/2년 이상

※ 충북도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 비해 지급금액이 가장 적고, 자격요건도 가장 높음

- 내수면 어업인과 타 시도 지급금액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,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시도 수준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

다.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조례안의 전체적인 용어 정비 : 적절함

-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게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농업인 뿐만아니라 내수면어업인을 포함하고자 농업을 농어업으로, 농업인을 농어업으로 변경함

- 따라서 조례의 제명도 ‘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’ 에서
‘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’ 로 변경한 것으로 다른
이견이 없음

○ 안 제2조는 농어업과 농어업인, 농업경영체,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
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 등을 명확히 한
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○ 안 제8조제1항의 경우 ‘거주하는 농업인’ 을 ‘주소를 두고 거주
하는 농어업인’ 으로 변경하여 충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도록
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나,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
○ 안 제9조제1항에서 공익수당 지급액을 ‘연 50만원’ 에서 ‘연 60
만원’ 으로 상향하여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보상 요구에 대응하고,
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다만, 상향조정된 지급액에 대한 재원조달방안과 지급방법에 대한
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
○ 안 제11조는 지급제외 대상을 종전 8개호에서 4개호로 축소하여
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음

- 특히, 제1호의 ‘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,900만원’ 을 ‘농어업 외
종합소득금액 3,700만원’ 으로 조정한 것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과
타 시도 지급제외 대상과 비교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

- 또한, 군인연금 등 3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여
공익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은퇴 후 귀농한 농어업인의
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됨

○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

구 분	현행	변경
조례명 및 용어 변경	◦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	◦ 충청북도 <u>농어업인</u>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	◦ 농업인	◦ <u>농어업인</u>
지급액 증액	◦ 50만원	◦ 60만원
지급 제외대상 및 기준 변경	◦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제외기준 2,900만원 이상	◦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외기준 <u>3,700만원</u> 이상
	◦ 5년 미만 귀농인(경영체등록)	◦ <u>삭제</u>
	◦ 3대 연금 수급자	
	◦ 공공기관·공기업 임직원	
◦ 3대연금 수급자 및 공공기관·공기업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농업인		

라. 종합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
- 다만, 아래와 같은 사항은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함
 - 안 제8조제1항에서 ‘주소’ 를 두도록 하여 요건을 강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‘3년 이상’ 의 요건을 완화하지 않은 것은 타 시도(대부분 1년 이상)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 - 안 제9조와 안 제11조의 지급액 증액편성과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도와 시군의 재정 상황, 재원마련 방안과 지급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함